

투자위험등급 :
1 등급
[매우 높은 위험]

산은자산운용(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 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 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 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간이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산은 2020 증권투자신탁 제 1 호[주식]에 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요약 정보를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은 2020 증권투자신탁 제 1 호[주식]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증권신고서 또는 정식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산은 2020 증권투자신탁 제 1 호[주식]
2. 집합투자기구 분류 :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3. 집합투자업자 명칭: 산은자산운용주식회사(02-3774-8000)
4.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각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본·지점
(자세한 내용은 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및 산은자산운용(주) www.kdbasset.co.kr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작 성 기 준 일: 2012.10.31
6.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2012.12.12
7.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10 조좌)
(모집 또는 매출 총액)
8.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9. 존속기간 :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은 없습니다.
10.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 → 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 www.kofia.or.kr
집합투자업자 및 각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홈페이지
서면문서: 집합투자업자 / 각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 | |
|----------------------|------|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 3 p |
| 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 |
| 1. 투자목적 | 4 p |
|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4 p |
| 3. 주요 투자위험 | 5 p |
|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6 p |
| 5. 운용전문인력 | 6 p |
| 6. 투자실적 추이 | 6 p |
| II. 매입 · 환매관련 정보 | |
| 1. 보수 및 수수료 | 8p |
| 2. 과세 | 10 p |
|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 환매절차 | 11p |
| III. 요약 재무정보 | 12 p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 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 보험 등의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포함)만 수행할 뿐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주식을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비교지수를 초과하는 수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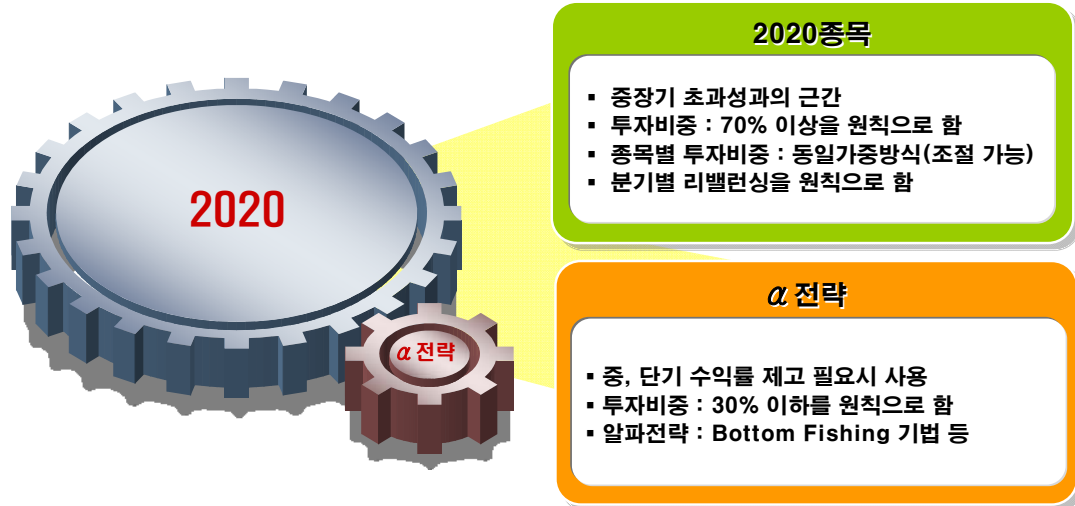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가. 투자 전략

1) 주력제품 기준 내수시장 점유율 30% 이상 또는 글로벌 마켓 점유율 5 위권 이내업체로 투자 풀(Investment Pool)을 구성하고, 비 계량적 요소를 최소화하는 한편 자체 개발한 Value-Momentum 모델을 통해 “Fundamental, Value, Momentum” 상위 20 개 내외 주식에 집중 투자하며, 분기별 Rebalancing 을 통해 벤치마크 대비 초과 수익을 추구합니다.

□ 기본 운용전략

- 대부분을 2020 종목으로 구성



□ 주식 운용전략

A. 투자대상 주식 선정 방법

①STEP I. 펀더멘탈 점검(영업 안정성을 중심으로 투자 풀 구성)

- ①주력 제품 기준 국내시장 점유율 30% 이상 또는 글로벌 시장 점유율 5 위이내 기업 추출
- ②연간 매출액 기준 2,000 억원 이상, 시가총액 기준 1,000 억원 이상 기업으로 투자풀 압축

②STEP II. 투자 매력 점검(자체 개발한 VMSSM 을 통해 상위 기업 順으로 Scoring)

- ①Valuation 항목(P/E, P/B, P/S, P/CF)과 Momentum 항목(ROE 증감, 순이익 증가율, 20 일 및 240 일 주가 변동)의 결합 Scoring
- ②일 평균 거래량 및 거래대금 기준으로 유동성 위험 제거
- ③시가총액 규모별 Scoring 을 통해 대/중/소형주 그룹 상위 20 개 내외 주식 선정

③STEP III. 유효성 검증(Consensus Data 및 기업탐방 등을 통한 유효성 관리)

- ①향후 기업이의 예상치를 이용한 선정 주식의 유효성, 타당성 최종 점검
- ②포트폴리오로 선정된 주식은 기업탐방, 세미나 등을 통해 유효성,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관리

B. 주요 투자전략

- 대부분을 20 개 내외 종목으로 구성함(투자비중 70% 원칙)
- 종목별 투자비중: 동일가중 방식(조정 가능)
- 분기별 리밸런싱을 원칙으로 함

□ 추가수익 전략

- 중, 단기 수익률 제고 필요시 사용하며 투자비중은 30%이하를 원칙으로 함
- Bottom-Fishing 기법 : 기업 내재가치 대비 비이성적 급락 종목에 투자
- -> 단기급락시 분할매수, 주가회복과정에서 분할 매도

2)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성과비교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비교지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시장 상황 및 투자 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 비교 지수 : KOSPI × 90% + Call × 10%**

- KOSPI: 한국거래소에서 발표하는 한국주식시장을 대표하는 종합주가지수로서, 유가증권시장 상장 종목을 대상으로 한 시가총액식 지수

나. 위험 관리

■ 위험관리 체계

당사는 위험관리규정에 따른 리스크관리위원회를 통하여 위험 관리의 정책수립·감독 및 승인에 관한 사항을 총괄합니다. 운용 조직과 독립된 위험관리담당부서는 투자운용과 관련된 위험을 통제하기 위하여 상품개발 단계에서부터 사전 적인 위험 점검을 실시하며, 집합 투자기구 설정 이후에는 운용내역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을 통하여 위험을 관리합니다. 매월 자산운용 위원회를 개최하여 투자전략 및 운용정책을 수립하며, 성과평가 회의를 통하여 포트폴리오 위험 및 요인분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위험단계별로 리스크관리 조치를 시행하여 투자전략을 재점검토록 하고 있습니다.

■ 다층적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운용 부서의 실시간 자체점검 -> 컴플라이언스 팀 점검 -> 내부 감사로 연계되는 다층적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통해 투자 제약 및 고객 부여 제약에 대한 집중적 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임시 방편식의 관리 시스템이 아닌 시스템에 기초한 사전 컴플라이언스에 주력하여 오류 발생 확률을 최소화 합니다.

■ 세부위험 관리 전략

세부 위험을 주의, 경계, 위기단계의 3 단계로 나누고 위험요인을 수익률 및 시장하락으로 관리하여 각 단계에 따른 위험관리방안을 수립, 실행함

3. 주요 투자위험

| 구 분 |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
|--------------|--|
| 주식가격변동위험 | 당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국내주식에 투자함으로써 주식시장의 가격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대상주식이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당해 투자신탁의 가치도 일정수준 하락하게 됩니다. |
| 금리변동위험 |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가격 하락에 의한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시장위험 | 신탁재산을 국내주식 등에 투자함으로써 이 투자신탁은 국내금융시장의 주가,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운용에 있어 예상치 못한 정치·경제상황, 정부의 조치 및 세제의 변경 등은 당해 신탁재산의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 파생상품 레버리지위험 | 주식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레버리지효과(지렛대효과)로 인하여 파생상품 그 자체에 투자되는 금액보다도 상당히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 거래상대방 및 신용위험 | 당해 투자신탁은 주식, 채권, 파생상품거래 등에 있어서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등에 따라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채무불이행 위험이 커짐으로 인해 급격한 가치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 국가위험 |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 및 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이상품은 투자대상 국가의 시장, 정치, 경제상황에 따른 위험 및 한국의 경제성장률, 이자율 등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

| | |
|----------------|---|
| 집중투자위험 | 이 투자신탁은 소수 주식종목에 집중투자함으로써 다수의 종목에 분산투자하는 일반적인 주식형 집합투자기구보다 개별 종목 변동성에 더 민감하며,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 변동성에 노출됩니다. |
| 집합투자기구 규모위험 | 투자신탁의 규모가 일정 수준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 투자자산의 편입 및 분산투자 등 정상적인 운용이 불가능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투자신탁의 운용성과 및 가치 하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유형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60%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며 주로 20 개의 소수 주식에 투자하므로 투자등급 5등급중 1등급에 해당하는 매우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장기 성장형 투자전략을 추구하고 매우 높은 수준의 가격변동 위험을 감내할 수 있고 투자원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을 잘 아는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이 위험등급분류는 산은자산운용의 내부 기준에 따른 위험등급입니다. 판매회사는 판매회사별 특성을 반영하여 위험등급을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5. 운용전문인력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 성명 | 생년 | 직위 |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2012.10.31 기준) | |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
|-----|------|----------|--------------------------------------|-------|--|
| | | | 펀드 수 | 규모 | |
| 윤지용 | 1976 | 포트폴리오매니저 | 5개 | 172억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8 ~ 현재 산은자산운용 운용팀 - 11.4 ~ 12.8 산은자산운용 Active 운용 1 팀 - 10.10 ~ 11.4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 주식운용팀 - 07.1 ~ 10.10 이스타투자자문 주식운용팀 - 05.11 ~ 06.12 에프엔가이드 평가모델팀 - 02.3 ~ 05.6 우리투자증권 기업분석팀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졸) |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이 투자신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주1)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f.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단위: %)

| 기간 | 최근 1년차 | 최근 2년차 |
|---------|-----------------------|-----------------------|
| | 11.11.01 ~12.10.31 | 10.11.01 ~11.10.31 |
| 통합 클래스 | -9.58 | -1.33 |
| 비교지수 | 0.61 | 1.80 |
| A 클래스 | -10.69 | -2.56 |
| 비교지수 | -0.62 | 0.56 |
| Ae 클래스 | - | - |
| 비교지수 | - | - |
| C1 클래스 | -11.57 | -3.44 |
| 비교지수 | -1.59 | -0.42 |
| C2 클래스 | -11.35 | - |
| 비교지수 | -1.35 | - |
| C3 클래스 | - | - |
| 비교지수 | - | - |
| Ce 클래스 | -10.95 | -2.86 |
| 비교지수 | -0.91 | 0.26 |
| Cw 클래스 | -10.24 | -2.07 |
| 비교지수 | -0.13 | 1.06 |
| C-d 클래스 | -11.03 | -6.10 |
| 비교지수 | -1.01 | -7.74 |

주1) 비교지수: KOSPI × 90% + Call × 10%

2) 상기 수익률은 해당 기간의 수익률을 말합니다.

3) 상기 수익률은 작성기준일(2012.10.31)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종류 Ae, C3 수익증권의 수익률은 작성기준일(2012.10.31) 현재 설정 후 1년 미만으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5) 종류 C4, ,Ca, Cf 수익증권의 수익률은 작성기준일(2012.10.31) 현재 미설정으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II 매입·환매관련 정보

1. 보수 및 수수료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 명칭(클래스) | 가입자격 | 수수료율 | | | |
|---------|------|-------------|-----------------|-------|-----------|
| | | 선취판매 수수료 | 후취판 매 수수료 | 환매수수료 | 전환 수수료 |
| | | | | | |

| | | | | | |
|-----|---|--|----|---|----|
| A | 가입제한은 없으며, 선취판매 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 1.0% 이내* | 없음 | 30일미만: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 이익금의 30% (단, 종류C2, 종류C3, 종류C4 수익증권의 경우 수익증권 전환 후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는 환매수수료가 부과되지 아니하나, 전환후 추가 납입분에 대해서는 환매수수료가 부과 됩니다.) | 없음 |
| Ae |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가입하면서, 선취판매 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 증권 | -최초설정일~2012.12.31 : 납입금액의 0.70% 이내* -2013.01.01~2013.12.31 : 납입금액의 0.60% 이내* -2014.01.01~신탁계약해지 : 납입금액의 0.50% 이내* | | | |
| C1 | 가입제한 없음 | 없음 | | | |
| C2 | 1년이상 종류 C1 가입자 | | | | |
| C3 | 1년이상 종류 C2 가입자 | | | | |
| C4 | 1년이상 종류 C3 가입자 | | | | |
| Ca | 납입금액이 50억원 이상인 투자자 | | | | |
| C-d | 집합투자업자 및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보수의 10%를 독거노인 지원 및 저소득 층의 장학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 | | | |
| Ce |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가입한 투자자 | | | | |
| Cf | 자본시장법 및 이와 유사한 외국법령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증권의 간접투자자산 | | | | |

| | | | | |
|------|---|------|--|-----|
| | 운용업법에 따른 간접투자기구를 포함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기관투자자 및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 | | |
| Cw |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한 자 또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특정금전신탁 | | | |
| 부과기준 | | 납입금액 | | 이익금 |

* 선취판매수수료율은 상기 범위내에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별로 차등적용할 수 있습니다. 차등적용의 내용은 금융투자협회,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 구분 | 지급비율 (연간, %) | | | | | | | | | | | 지급시기 |
|----------------------|--------------|---------------------|------------|------------|------------|------------|------------|------------|------------|------------|------------|------------------------------|
| | 종류 A | 종류 Ae | 종류 C1 | 종류 C2 | 종류 C3 | 종류 C4 | 종류 Ca | 종류 C-d | 종류 Ce | 종류 Cf | 종류 Cw | |
| 집합투자업자보수 | 0.70 | | | | | | | | | | | 매 3 개월 후급 및 투자신탁 전부해지시 |
| 투자매매업자·투자 중개업자 보수 | 0.5 0 | 0.3 5 주6) | 1.5 0 | 1.2 5 | 0.9 9 | 0.8 9 | 0.7 0 | 0.9 0 | 0.8 0 | 0.0 3 | 0.0 0 | |
| 신탁업자 보수 | 0.02 | | | | | | | | | | | |
| 일반사무관리보수 | 0.0125 | | | | | | | | | | | |
| 기타 비용 | 0.0 075 | 0.0 103 | 0.0 075 | 0.0 075 | 0.0 102 | - | - | 0.0 079 | 0.0 076 | - | 0.0 076 | 사유발생시 (주 1 참조) |
| 총보수 및 비용 | 1.2 400 | 1.0 928 | 2.2 400 | 1.9 900 | 1.7 327 | 1.6 225 | 1.4 325 | 1.6 404 | 1.5 401 | 0.7 625 | 0.7 401 | - |
| 증권 거래비용 | 0.9 274 | 0.8 977 | 0.9 212 | 0.9 521 | 2.1 464 | - | - | 0.9 371 | 0.9 218 | - | 0.9 030 | 사유발생시 (주 3 참조) |

주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또는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직전 회계기간(2011.8.16~2012.8.15)의 수치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 및 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3) 증권거래비용은 직전 회계기간(2011.8.16~2012.8.15)의 수치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5) 종류 C4, Ca, Cf 수익증권은 작성기준일(2012.10.31) 현재 미설정된 종류 수익증권이므로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주6) 종류 Ae 수익증권의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보수율은 최초 설정일부터 2012년 12월 31까지 적용되며, 이후의 보수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a. 2013년 1월 1일 ~ 2013년 12월 31일: 연 0.30%
- b. 2014년 1월 1일 이후: 연 0.25%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누적)>
(단위: 천원)

| 구분 | 투자기간 | 1년후 | 3년후 | 5년후 | 10년후 |
|--------|---------------|-----|-----|-------|-------|
| 종류 A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 226 | 489 | 772 | 1,579 |
| 종류 Ae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 181 | 415 | 668 | 1,390 |
| 종류 C1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 230 | 676 | 1,103 | 2,261 |
| 종류 Ca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 147 | 456 | 788 | 1,725 |
| 종류 C-d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 168 | 521 | 898 | 1,956 |
| 종류 Ce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 158 | 490 | 845 | 1,845 |
| 종류 Cf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 78 | 244 | 425 | 948 |
| 종류 Cw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 76 | 237 | 413 | 921 |

주 1) 투자자가 1,000 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2) 종류 A, Ae 수익증권의 경우, 선취판매수수료는 최대한도인 납입금액의 1% 및 0.7%를 가정하여 적용한 것입니다.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마다 적용되는 선취판매수수료율이 다를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3) 종류 C1 수익증권에 가입한 투자자는 1년 이상 경과시 종류 C2-> 종류 C3-> 종류 C4 로 자동 전환되므로 이상의 예시에서는 전환을 가정하여 적용한 것입니다. 참고로 종류 C2, 종류 C3, 종류 C4 의 경우에는 최초가입이 불가능한 전환형 종류이므로 투자자는 종류 C1 로만 최초가입이 가능합니다.

다. 집합투자업자보수 및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보수의 공익단체 기부

이 투자신탁의 종류 C-d 수익증권은 집합투자업자 보수금액의 10%,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보수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의 보수에서 인출하여 공익단체에 기부함으로써 아래와 같은 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 1. 독거노인 지원
- 2. 저소득층 장학사업 지원

2. 과세

투자자는 투자대상으로부터 발생한 이자, 배당 및 양도차익(해외주식 매매차익 포함)에 대하여 소득세 등(개인 15.4%, 법인 14.0%)을 부담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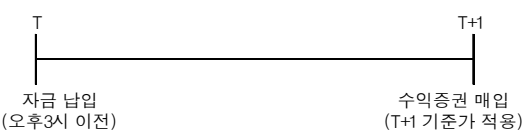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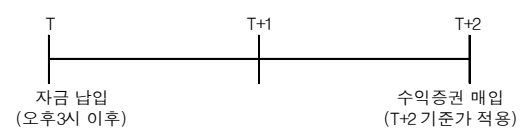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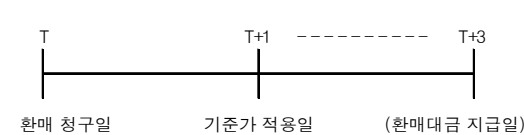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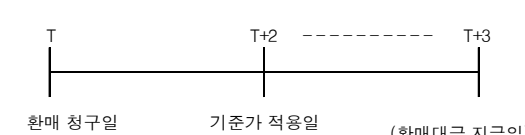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환매 절차

가. 기준가격 산정의 산정 및 공시

| 구분 | 내용 |
|------|--|
| 산정방법 |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공고·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순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을 공고·게시일 |

| | |
|------|---|
| | 전날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
| 공시장소 |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영업점, 집합투자업자(http://www.kdbasset.co.kr) ·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한국금융투자협회(http://www.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

나. 매입 및 환매 절차

| 구분 | 오후 3시 이전 | 오후 3시 이후 |
|----|---|--|
| 매입 | <p>-자금을 납입한 영업일(T)로부터 제2영업일(T+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p>  | <p>-자금을 납입한 영업일(T)로부터 제3영업일(T+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p>  |
| 환매 | <p>-환매청구일(T)로부터 제2영업일(T+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4영업일(T+3)에 환매대금을 지급</p>  | <p>-환매청구일(T)로부터 제3영업일(T+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4영업일(T+3)에 환매대금을 지급</p>  |

다. 전환절차 및 방법

- ①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전환청구와 관계없이 수익증권의 보유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 또는 최초 취득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른 종류 수익증권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환시 적용되는 당해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종류의 수익증권으로 자동으로 전환합니다. 단, 수익자가 최초로 매입하는 수익증권은 종류C1 수익증권에 한합니다.
 1. 종류C1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종류C2 수익증권으로 전환
 2. 종류C2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종류C3 수익증권으로 전환
 3. 종류C3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종류C4 수익증권으로 전환
 4. 보유기간에 따른 종류별 수익증권간 전환은 판매수수료 체계가 동일한 종류의 수익증권간으로 한합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에는 위의 각 해당 전환일에 전환처리하되, 전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전환처리합니다. 다만, 최초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매년 동일한 일자를 전환일로 정하므로 다음 전환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③ 또한, 최초 투자이후 추가 매수하는 수익증권은 추가매수시점에 관계없이 전환일에 일괄전환하며, 추가매수일이 전환일과 동일할 경우, 추가 매수절차가 완료되는 일자의 익영업일에 전환합니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해당 전환일의 클래스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 ⑤ 수익자가 전환일 이전에 일부환매를 신청하여 환매일과 전환일이 동일할 경우에는 환매절차가 완료되는 일자의 익영업일에 전환합니다.
- ⑥ 규약 제4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익증권환매에 따른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합니다.
 1.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의 전환을 위하여 환매청구하는 경우
 2. 수익증권을 전환한 후 환매청구하는 경우. 다만 전환 후 추가 납입분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요약 재무정보

(단위: 원, %)

| 대차대조표 | | |
|----------|----------------|----------------|
| 항 목 | 제 2 기 | 제 1 기 |
| | (2012.08.15) | (2011.08.15) |
| 운용자산 | 47,667,404,914 | 29,332,028,987 |
| 증권 | 47,506,707,900 | 27,595,629,800 |
| 파생상품 | 0 | 0 |
| 부동산/실물자산 | 0 | 0 |
| 현금 및 예치금 | 160,697,014 | 1,736,399,187 |
| 기타 운용자산 | 0 | 0 |
| 기타자산 | 4,282,624 | 1,238,676,902 |
| 자산총계 | 47,671,687,538 | 30,570,705,889 |
| 운용부채 | 0 | 0 |
| 기타부채 | 503,703,815 | 1,435,386,018 |
| 부채총계 | 503,703,815 | 1,435,386,018 |
| 원본 | 50,981,398,864 | 25,053,666,770 |
| 수익조정금 | -303,455,059 | 4,380,793,904 |
| 이익잉여금 | -3,509,960,082 | -299,140,803 |
| 자본총계 | 47,167,983,723 | 29,135,319,871 |

| 손익계산서 | | |
|------------|-----------------------------|-----------------------------|
| 항 목 | 제 2 기 | 제 1 기 |
| | (2011.08.16 - 2012.08.15) | (2010.08.16 - 2011.08.15) |
| 운용수익 | -3,509,115,213 | -306,262,796 |
| 이자수익 | 109,218,382 | 47,392,296 |
| 배당수익 | 566,370,800 | 221,583,800 |
| 매매/평가차익(손) | -4,184,704,395 | -575,238,892 |
| 기타수익 | 3,635,711 | 11,223,863 |
| 운용비용 | 0 | 0 |

| | | |
|---------|----------------|--------------|
| 관련회사 보수 | 0 | 0 |
| 매매수수료 | 0 | 0 |
| 기타비용 | 4,480,580 | 4,101,870 |
| 당기순이익 | -3,509,960,082 | -299,140,803 |
| 매매회전율 | 513.56 | 485.86 |

주1) 요약재무정보의 항목 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 동안 매도한 주가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가가액으로 나누어서 산출합니다. 1회계연도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합니다.